■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3. 3. 30.>

##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접수일		60일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	
	전자우편			전화번호 5	또는 휴대전화번호
어촌계	어촌계명				
	소재지	시・군	읍·면·동	리	도로명주소

「수산업・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**신청인** (서명 또는 인)

○○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

신청인 제출서류	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	
	가.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: 신청일까지	
	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	
	나.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: 어촌계 인가	
	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	
	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	
	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	
	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	수수료
	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: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	
	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. 다만,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	없 음
	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	
	할 수 있는 명부로 합니다.	
	2.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	
담당 공무원	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	
확인사항		

#### 작성 방법

- 1.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2. "신청인"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3. "어촌계"란에는 신청인이 속한 해당 어촌계명과 어촌계 주소지를 적습니다.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수산업・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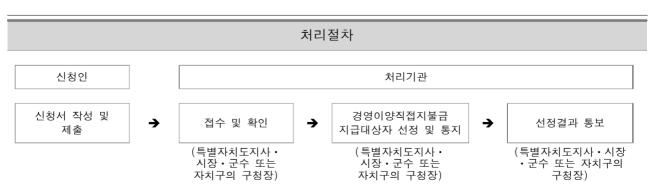
동의자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####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• 활용 동의

- 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합니다)의 수산업・어촌 관련 융자・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- 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·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,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- 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·어촌 관련 융자·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, 선정 심사 및 공개, 보조금 등의 부정·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- 4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(이하 "등록정보"라 합니다)의 확인, 「수산업・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・점검・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, 신청・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- 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・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위 개인정보를 보유・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 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


# 개인정보 수집 • 이용 • 제공 • 조회에 관한 사항

## 1. 수집 • 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ㆍ이용 목적	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,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, 보조금 등의 부정·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
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<ul> <li>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・배우자・직계존비속의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・전화번호 등 연락처</li> <li>■ 어촌계 정보: 어촌계 소재지,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</li> <li>■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,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</li> </ul>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■ 수집·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(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)	

### 2. 제공 • 조회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	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	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■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부정·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
제공·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	<ul> <li>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・배우자・직계존비속의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・전화번호 등 연락처</li> <li>■ 어촌계 정보: 어촌계 소재지,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</li> <li>■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, 조건불리지역직 접지불금 수령 정보</li> </ul>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	■ 제공·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(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,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,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·이용합니다)